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세	정	과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7.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를 위하여 출산·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에 대한 기한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

- 1)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2)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3)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4)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5)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6)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안 제9조의2)

나. 출산 및 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및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장애인복지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출산 및 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2027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자녀(이하 이 조에서 “출생자녀”라 한다)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하고, 이하 이 조에서 “출생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생자녀 양육자가 소유한 자동차(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다만, 출생자녀 양육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 소유는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면 요건

가. 출생자녀 양육자 및 출생자녀가 출생일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까지 계속하여 구

미시에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될 것

나. 출생자녀 양육자와 출생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출생일 이후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없을 것

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 및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수가 확인될 것. 다만, 자녀의 수를 확인할 때는 18세 미만의 자녀만을 계산한다.

2. 감면 내용

가. 출생자녀가 첫째(해당 자녀의 출생일 현재 제1호다목에 따라 확인된 자녀의 수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한 출생 일자 순서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해당 자녀의 출생일(이하 이 조에서 “감면 기간의 기산일”이라 한다)로부터 1년간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출생자녀가 둘째인 경우 감면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출생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감면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3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3. 출생자녀가 여러 명으로 둘 이상의 감면 내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기간의 종료일이 가장 나중에 도래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출생 자녀 양육자가 이 조에 따라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가 출생자녀의 출생일 전에 구미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감면 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1.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각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기준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경우 : 그 납기가 있는 달의 다음 달 1일
2.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 그 분할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달 1일
3.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 그 연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
4. 「지방세법」 제128조제4항에 따라 연세액 전액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경우 : 그 연세액의 납기가 있는 달의 다음 연도 1월 1일

③ 출생자녀 양육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1. 출생자녀 양육자가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이하 “감면받은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출생자녀 양육자 간 이전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출생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면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다만, 추징할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 기간 중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출생자녀 양육자 및 출생자녀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2. 출생자녀 양육자와 출생자녀가 세대 분가하는 경우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하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의2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
은 조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9조의5 중 “· 법 제80조의2제1항”을 “법 제80조의2제1항”으로, “감면
기간”을 “감면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복감면의 배제)”를 “(중복 감면의 배제)”로 하고, 같
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과세대상”을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으로,
“감면규정”을 “지방세 특례 규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감면기한의 특례)”를 “(감면 기한의 특례)”로 하고, 같
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감면기한”을 “감면 기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 및 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	대한	감면) ① -----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			-----	
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			-----	
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			-----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			-----	
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	
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			-----	
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			-----	
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			-----	
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			-----	
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			-----	
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			-----	
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			-----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			-----	
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			-----	
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			-----	

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신 설>

2027년 12월 31일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출산 및 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2027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자녀(이하 이 조에서 “출생자녀”라 한다)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미

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하고, 이하 이 조에서 “출생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생자녀 양육자가 소유한 자동차(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다만, 출생자녀 양육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 소유는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면 요건

가. 출생자녀 양육자 및 출생자녀가 출생일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까지 계속하여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

될 것

나. 출생자녀 양육자와 출생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출생일 이후 세대를 분가
한 사실이 없을 것

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의 출생 사실 및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의 수가 확
인될 것. 다만, 자녀의 수
를 확인할 때는 18세 미만
의 자녀만을 계산한다.

2. 감면 내용

가. 출생자녀가 첫째(해당 자
녀의 출생일 현재 제1호다
목에 따라 확인된 자녀의
수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한 출생 일자 순
서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
우 해당 자녀의 출생일(이
하 이 조에서 “감면 기간의
기산일”이라 한다)로부터

1년간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출생자녀가 둘째인 경우
감면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한
다.

다. 출생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감면 기간의 기산일
로부터 3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3. 출생자녀가 여러 명으로 둘
이상의 감면 내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기간의
종료일이 가장 나중에 도래하
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출생 자녀 양육자가 이
조에 따라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자동차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
면 받으려는 자가 출생자녀의
출생일 전에 구미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감면 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1.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각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기준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경우 : 그 납기가 있는 달의 다음 달 1일

2.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 그 분할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달 1일

3.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 그 연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

4. 「지방세법」 제128조제4항에 따라 연세액 전액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

는 경우 : 그 연세액의 납기가
있는 달의 다음 연도 1월 1일
③ 출생자녀 양육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1. 출생자녀 양육자가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
동차(이하 “감면받은 자동차”
라 한다)의 소유권을 출생자
녀 양육자 간 이전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
고 다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출생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
대로 이전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면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생 략)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다만, 추징할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 기간 중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출생자녀 양육자 및 출생자녀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2. 출생자녀 양육자와 출생자녀가 세대 분가하는 경우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하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호구역 안--- 2027년 12월 31일---.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 2027년 12월 31일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의2(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제9조의2(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

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조문신설 2021.6.2.]

제9조의5(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 법 제8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항 각 2호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2027년 12월 31일-----

----- 대해서-----

제9조의5(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 ----- 감면기간-----

-----.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
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② 구미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
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
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
법」에 따른다.

제14조(중복 감면의 배제) ----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
----- 지방세 특
례 규정-----
-----.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2호서식-----
-----.

제18조(감면 기한의 특례) ----
--- 감면 기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5. 지방세 특례 대상·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명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취득

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 8. 생 략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

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 12. 생략

② ~ ③ 생략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생략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계 산 식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70조의2(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

에 따른 명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41조(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제40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59조(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2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 ⑥ 생략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

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생략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③ ~ ⑧ 생략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소 관 부 서		세 정 과
입 안 자	과 장	문 영 후
	팀 장	조 진 희
	담 당 자	김 경 모 (480-6852)